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71,917,557	29,157,527
일반회계		878,492,887	26,354,787
특별회계		93,424,670	2,802,740
	공기업특별회계	39,427,463	1,182,82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427,463	1,182,824
	기타특별회계	53,997,207	1,619,91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37,060	25,112
	자활기금특별회계	393,425	11,803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875,250	176,25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65,431	7,963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2,136,066	64,08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8,152	8,345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1,097,215	32,916
	수질개선특별회계	43,114,608	1,293,4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